

# 청주교육대학교 양성평등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08. 5. 27 규칙 제1196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의2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주교육대학교 양성평등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양성평등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원임용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
2.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
3. 여교수 보직 및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 확대 방안 수립
4. 학내 여성인적자원 육성 및 활용 방안 수립
5. 학내 여성지원 프로그램 개발
6.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3조(위원회의 구성)** ①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처장, 학술문화원장(이상 당연직)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의 3분의 1이상은 여성으로 한다.

②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소집한다.

1. 총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
2.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
**제7조(실행위원회)** ①위원회에는 양성평등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실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학내외 인사 중에서 추천한 자를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8조(간사)**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처 교무팀장으로 한다.

**제9조(서면의결)** 위원장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**제10조(기타)**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부 칙 <2008. 5. 27. 제정>

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제4조 제②항에 의한 최초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01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